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A, ACF, ACF-RA, COG-RA, IGT-RA, JFA, JFA-RA, JGA, JGA-RA, JGA-RB, JGA-RC, JHF, JOA-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학생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I.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은 학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인 학생은 건강, 안전,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부정적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조기중재, 교정활동 시행과 필요할 경우 특정 처벌을 시행하여 괴롭히기/왕따/불링을 예방하고 신고한 사람을 향한 보복행위와 양갈음의 방지를 위한 괴롭히기/왕따/불링 금지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II. 정의

A. *왕따, 희롱, 협박*이란, 언어, 신체, 서면,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의적인 접촉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혜택이나 기회 및 수업 이행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다음 중-

-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서 명시된 실제 또는 예상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 b) 학생의 개인적 신체부위 노출하고 학생의 묘사 또는 설명이 포함되거나 성적 접촉 관련 행위 중을 포함한 성에 관련된 경우.
- c) 협박 또는 심각하게 겁을 주는 행위 그리고

2. 다음 중-

- a) 학교 공공건물, 학교 후원 활동, 학교 통학버스에서 일어났을 경우. 또는
- b) 학교운영에 심각하게 혼란을 줄 경우

- B. 사이버 불링은 왕따, 희롱, 협박의 한 방법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소셜미디어 사용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불링에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C. "전자 커뮤니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이란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 D. 조정 활동이란 특정한 발생이나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강도, 기간, 빈도의 범위에 따른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의 접근방법입니다.
- E. *개인적인 부위(Intimate parts)*란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기노출, 음부, 엉덩이 여성 유두를 의미합니다.
- F. *예방 활동*이란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의 유행 및 전염성,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학교 전체 활동과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을 받거나, 하거나, 방관한 학생들에게 긍정적 행동 육성을 돕는 시스템의 일부이며 모든 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 향상 노력의 일환입니다.
- E. *성적 접촉(Sexual contact)*이란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식기와 생식기, 구두/입과 생식기, 항문과 생식기, 구두/입과 항문을 포함한 같은 또는 다른 성의 사람들 간의 성적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III. 행정절차

- A 예방
모든 학교는 책임있는 친화적 행동을 가르치고 강화하는 예방과 조정 방법과 활동을 시행합니다. 이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예방, 조정, 전문적 개발에 관련된 지역적 결정을 지도하기 위한 시행과 학교 환경 분석 설문조사
2.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의 유행성과 원인, 사회성 기술 개발, 긍정적 학교 환경 조성, 차이를 인정하기, 나이에 적절한 행동적 기대, 괴롭히기/왕따/불링의 예방 전략과 괴롭히기/왕따/불링이 일어날 경우의 중재에 초점을 맞춘 연례 전문성 교육
3. 학사 기간에 고용된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개발 교육
4.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해동을 돕고 특정 교육, 폭력예방, 학교 향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육구 전체의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 예방 프로그램.

B. 중재

1. 괴롭힘/왕따/불링의 분포, 원인, 결과와 예방의 의미를 가족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협력
2. 괴롭힘/왕따/불링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교육, 카운슬러 또는 기타 직접적인 중재. 중재에는 대체 행동과 사회성 능력을 교육하고 자각도를 높이도록하며, 공감능력과 관용을 개발하고 다양성에 대한 감사와 수용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여러 방법이 포함됩니다.
3. 괴롭힘/왕따/불링을 교정하고 자신 변호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며 앞으로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복이나 다른 괴롭힘/왕따/불링에서 보호하도록 가족과 다른 커뮤니티 이익관계자가 함께 계획한 구성된 회복조치와 보충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4. 중재의 범위는 사회 정서적, 행동 양식적, 학업적 도움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필요를 하며 앞으로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임을 증명합니다.
5. 학교 중재를 적용한 후, 괴롭힘/왕따/불링에 연관된 학생을 위한 사회 서비스, 건강, 행동건강 자료를 교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인 학생은 모두 정신, 신체건강과 안전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C. 결과

1. 이전에 괴롭힘/왕따/불링을 한 학생, 괴롭힘/왕따/불링의 피해자로 사건의 트라우마를 상쇄할 방법을 적용한 학생, 방관자였으나 괴롭힘/왕따/불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인정하고 표창합니다.
2. 괴롭힘/왕따/불링을 행한 학생, 보복행위와 앙갚음에 관련된 학생들 그리고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전한 학생의 처분 및 결과는 MCPS *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각 학교는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행한 학생의 처분 및 결과 리스트를 학교 훈육계획에 포함합니다. 처분 및 결과는 MCPS Regulation JFA-RA,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CPS Regulation JGA-RB, *Suspension and Expulsion*,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MCPS 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IV. 신고 절차

다음 절차는 Board Policy ACF, *Sexual Harassment*: 에서 요구하는 성 희롱의 행위를 포함한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A.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학생, 학부모, 후견인 또는 학생과 가까운 친척, 학교 교직원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이 양식을 학교장/학교장 대리에게 제출합니다.
- B. 학생, 학부모, 후견인, 학생과 가까운 친척이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를 교직원에게 신고한 경우, 교직원은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작성하고 학교 행정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만약 학생, 학부모, 후견인, 가까운 친척이 직접 양식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교직원이 학생을 도와 양식을 작성합니다.
- C. 각 학사연도 초,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후견인, 교직원에게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알립니다. 각

학교에는 학교 사무실, 카운슬러 사무실, 미디어센터, 양호실/헬스룸에서 MCPS Form 230-35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조사 절차

다음 절차는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A. MCPS 양식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받고 2일 이내에 학교장과/또는 대리인은 양쪽이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포함한 적절하고 신뢰할 만하며 공정한 조사를 즉시 실시합니다.
 1. 조사 내용은 MCPS 양식 230-36,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Incident School Investigation Form*에 기재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이나 학교장 대리는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에 연관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에게 사건 이후 3일 이내에 MCPS Form 230-35을 받아야 합니다.
- B. MCPS Form 230-35,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와 함께 MCPS Form 230-36,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학교 사건 조사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Incident School Investigation Form)*은 학생 기록의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학교 사무실의 비밀유지 파일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학생의 누적기록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30-35과 230-36 양식에서의 정보는 책정된 절차에 따라 OASIS에 기록합니다.
- C. 학교 행정담당이나 그 대리인은 조사를 시작하고/또는 행동 교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교육구와 학교 훈육계획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결과/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조사를 마친 후,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구제조치 적용과 적절한 조치, 개선 및 교정을 위한 측정과 적절한 경우 행동에 따른 결과 적용,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또는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및 기타 학생이 차별적 영향이나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적용합니다.
- D. 학교장이나 학교장 대리는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에 연관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및 관련된 사람에게 사건 이후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합니다.

- E.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을 행한 학생에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나 증인이 된 사람에 대한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를 계속할 경우, 훈육 또는 징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 F. 조사 후 2주 이내에, 담당 교직원은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의 희생자인 학생과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에 연관된 학생의 피해상황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만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중재 카운슬링의 일부로 이 회의를 갖을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회의나 대화는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의 희생자인 학생과 함께 피해상황이 끝난 4주 이내에 갖게 됩니다.
- G.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는 MCPS Regulation COB-RA, *Reporting a Serious Incident*에서 명시한 대로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학교 행정담당/대리인은 MCPS Regulation COB-RA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는 경찰의 도움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는 학교 경찰의 행동, 타임라인과 커뮤니티에 알리는 절차가 포함되며 이는 경찰 조사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H.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는 신고와 조사를 모니터하고 이에 관한 문제를 위한 자원을 학교에게 제공합니다.
- I.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에 관한 결정에의 이의제기는 MCPS Regulation KLA-RA, *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에 있는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VI.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절차

- A. 만약 약자 괴롭히기/왕따/블링 행위나 패턴이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또는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무료 및 적절한 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에 해당할 경우, 교직원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팀 또는 Section 504 committee 회의를 주관합니다.

- B. IEP 팀 또는 Section 504 committee는 학생의 IEP 또는 Section 504 plan을 검토하고 FAPE 수혜 학생에게 이 계획이 약자 괴롭히기/왕따/블링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VII. 준비된 신고양식

- A.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은 모든 학교의 사무실, 카운슬러 사무실, 도서관/미니어센터, 보건실/헬스룸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B.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 이 MCP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C. 학교 행정담당은 교직원에게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며 학사연도 중 주기적으로 이를 상기시킵니다.
- D. 학교 행정담당은 학생들에게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이 준비되어 있음을 학교 시작 첫 주의 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알리며 학사연도 중 주기적으로 이를 상기시킵니다.
- E. 학교 행정담당은 학부모/후견인에게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와 MCPS *Community Resources and Internet Sites Regarding Bullying*이 준비되어 있음을 학사연도 초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학교 안내문, 학교 뉴스레터, 교육구 이메일, 첫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 모임에서와 학교 회의 등을 통해 알립니다.
- F. 만약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핸드북이 있을 경우, MCPS 양식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이 준비되어 있음을 핸드북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G. 학생에게 작성한 **bullying report form**은 교직원 누구에게라도(학교장에게 전하도록)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학생이 양식을 제출하기 거북스러워하지 않도록 학교 행정담당은 선택한 장소에 잠긴 박스를 두어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학교가 잠긴 박스를 둘 경우,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후견인, 교직원이 이 장소를 알며 교직원이 매일 이 박스를 확인하고 비우도록해야 합니다.

VIII. 도움 서비스

괴롭히기/왕따를 당한 학생과 제공한 학생 그리고 방관한 학생들을 위한 도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모든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는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에 따른 효과적이고 일관성있는 다른 접근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 학교와 교육구

1. 교육
2. 교실에서의 지침과 소그룹 카운슬링
3. MCPS “School Resources for Harassment, Intimidation and Bullying” 책자
4. 공동 문제해결/교육관리 팀(Educational Management Team-EMT) 절차
5. 긍정적 행동 중재와 도움(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PBIS)
6. 기능적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
7. 행동 조정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 -BIP)
8. 종합적인 사회성 기술 훈련(Comprehensive social skills training)
9. 인성교육
10. 분노 조절능력 훈련
11. 인지 행동 상담
12. 부모/후견인의 참여
13. 부모/후견인 트레이닝/워크숍
14. 또래 지원 그룹
15. 스케줄의 재조정

16. 학교 향상 계획

17. 회복 조치

B. 지역사회/가족

자료 리스트, *Community Resources and Internet Sites Regarding Bullying*는 학교 사무실과 MCP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VIII.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 연락처:

Deborah Nelson, Ph.D., NCSP
Section Chief, School Safety and Psychological Services
Division of Student, Family and School Support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
410-767-0294
이메일: Deborah.nelson@maryland.gov

X. 검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7-424.1, and §7-424.3.

Regulation History: 새 규정 2010년 6월 4일; 갱신 2014년 10월 27일; 실질적 변경 2016년 3월 15일; 갱신일 2017년 2월 28일, 실질적 갱신 2017년 7월 24일. 2018년 6월 26일 갱신